

춘천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재나78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전 문

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

A

피고(재심원고), 항소인

B

변론 종결 2016. 4. 22.

판결 선고 2016. 5. 27.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3나5378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원주시 C 대 11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중 선내 (가) 부분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의 무허가 건물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침범부분 위에 있는 위 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3. 9. 2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 판결(2013가단2084호)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14. 6. 1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판결에 첨부된 별지 도면과 실제 도면이 상이한바, 이 사건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고, 실제 도면과 다른 제1심 판결에 첨부된 도면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건물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 재심사유 주장에 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나 과태료 부과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내지 7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내지 7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 재심사유 주장에 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심의 보충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경우에는 상소에 의하여 이를 주장하게 하고 상소로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에 의한 비상구제를 인정하려는 취지인바, 여기에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참조). 또한 판결정본이 소송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 소송과정에서 지적도 도면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는 2012. 9. 26. 원주시청에 피고가 무허가로 건축 중인 위 별지 도면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같은 달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건물공사를 중지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었음에도 피고는 2012. 10.경 건물에 대한 공사를 강행하였던 사실, 피고는 재심대상 사건에서 피고 소유 건물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길, 판사 허문희, 판사 정아영

별지도면

